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조인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59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2.

발 의 자 : 조인철 · 주철현 · 박용갑
허종식 · 이해민 · 이개호
박수현 · 어기구 · 고민정
최혁진 · 문진석 · 서삼석
김 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,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.

그러나 「전자금융거래법」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와 달리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상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는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있고,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들에게 통지가 적시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차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, 정보보호 체계 및 이용자 보호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.

이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 관리 및 예산 편성 권한을 부여하고,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이용자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45조의3제4항제1호마목·바목, 제48조의3제4항, 제76조제3항제11호의2 신설).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의3제4항제1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 관리 및 예산 편성

바. 그 밖에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48조의3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.

제76조제3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의2. 제4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침해사고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) 제48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
이 법 시행 이후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5조의3(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) ① ~ ③ (생략)	제45조의3(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④ ----- -----.
1.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총괄한다.	1. ----- -----.
가. ~ 라. (생략)	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마.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 관리 및 예산 편성</u>
<u><신 설></u>	<u>바. 그 밖에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/u>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⑤ ~ ⑦ (생략)	⑤ ~ ⑦ (현행과 같음)
제48조의3(침해사고의 신고 등) ① ~ ③ (생략)	제48조의3(침해사고의 신고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</u>

④ (생 략) 제76조(과태료) ①·② (생 략)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~ 11. (생 략) <u><신 설></u> 11의3. ~ 25. (생 략) ④ (생 략)	<u>고 통지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.</u> 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 제76조(과태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. 1. ~ 11. (현행과 같음) 11의2. <u>제48조의3제4항을 위반 하여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</u> 11의3. ~ 25.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
---	--